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515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51535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571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하명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단비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571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6.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6. 29. 접수 제190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항, 나.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경기 양평군 H 대 330.1㎡ 및 그 지상 조적조(연와조)스라브지붕 2층 주택 건물(이하 위 양평군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양평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과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6792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20. ‘C는 주식회사 D에 31,386,853원 및 그중 22,357,832원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3. 10.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D는 2020. 9. 16. 위 양수금 채권(양도인 O 주식회사, 양수인 주식회사 D, 채권양도계약일: 2017. 11. 22., 채권양도통지일: 2017. 12. 8., O 주식회사의 대출실행일: 2016. 3. 7.)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나. C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C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양평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매매예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는 같은 날(2016. 6. 29.) U과 사이에도 C 소유의 당진시 I 대 91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134.84㎡(이하 위 당진시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당진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U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6. 29. 접수 제28693호)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U에 대하여도 2016. 6. 29.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7627호) 2022. 1. 11.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위 U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9.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2022나103223호), 위 U의 상고 부제기로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적극재산 내역은 별지 적극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은데, 그 가액은 합계 959,360,400원인 반면에, C의 소극재산 내역은 별지 소극재산내역 기재와 같은데, 그 가액은 합계 960,261,6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박은주, 판사 변종두

별지